

화순군의회의원의 정활동비,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0. 이선 위원장 외 3인

나. 회부일자 : 2003. 10. 14

다. 상정일자 : 2003. 10. 14

(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의회운영위원장 이 선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국내여비 지급기준이 상향조정되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국내여비 기준단가 인상 (별표1)

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임	현지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야당)	식비 (1일당)
의장 부의장	1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10,000	46,000	25,000
의원	2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10,000	25,000	18,000

1. 화순군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 다만,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벽지 지역은 그려하지 아니한다.
2.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3.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찬주)

○본 조례안은 기내여비 기준단가인상 조례안으로 숙박비를 의장, 부의장은 41,000원에서 46,000원으로 의원은 22,000원에서 25,000원으로 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의 저촉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답변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7. 첨 부 :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·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정활동비·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"별표1"을 "별지"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현 행>

[별표 1]

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 임	현지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야당)	식 비 (1일당)
의 장 부 의 장	1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10,000	41,000	25,000
의 원	2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10,000	22,000	18,000

- 화순군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 다만,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벽지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천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-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<개정안>

[별표 1]

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8조 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운 임	현지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야당)	식 비 (1일당)
의장 부의장	1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10,000	46,000	25,000
의원	2등급	2등 정액	정 액	정 액	10,000	25,000	18,000

- 화순군내에서의 여행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 다만, 화순군내라 하더라도 벼지 지역은 그리하지 아니한다.
-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세마을호 특설, 2등급은 세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-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